

## 개정내용

- 노인·아동·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 
감면율을 연장하되,
    -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제4호 사회  
복지법인 해산 또는 설립허가 취소 및 제5호 사회복지시설 폐지신고 또는  
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를 추징사유로 추가하여 사후관리 강화

적용요령

- 2026. 1. 1. 부터 시행(부칙 §1)
  - 제22조제2항제4호 ·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 
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(부칙 §4)

2 개정조문

## **<지방세특례제한법>**